

제395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4월29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5.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5)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1)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2)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7)
1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3)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4)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4)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4)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4)
19.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6)
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4)
21. 국립대학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1)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1)
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5)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2)
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5)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2)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54)
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55)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7)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8)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6)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
3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1)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0)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6)
3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5)
3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6)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3)
4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0)
4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8)
4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0)
4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1)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2)
4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9)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7)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
5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0)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6)
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1)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2)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2)
5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6)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5)
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2)
6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8)
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1)
6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6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65.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2)
6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1)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
6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6)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7)
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1)
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3)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1)
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2)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3)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3)
7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7)
7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
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0)
7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9)
8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8)
8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651)
8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4)
83.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8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
8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4)
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8)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7)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6)
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1)
9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3)
9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2)
9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6)
9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9)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3)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9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8)
9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9)
9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3)
10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7)
10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3)
10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0)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요청안 6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6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6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6
5.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8
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5) 8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 8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1) 8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2) 8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8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8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7)	8
1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3)	8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4)	8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4)	8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4)	8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	8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4)	8
19.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6)	8
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4)	8
21. 국립대학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1)	8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	8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1)	8
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5)	8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2)	8
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5)	8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2)	8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54)	8
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55)	8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7)	8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8)	8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6)	8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	8
3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8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1)	8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0)	9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6)	9
3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5)	9
3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6)	9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9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3)	9
4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0)	9
4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8)	9
4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0)	9
4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1)	9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2)	9
4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9)	9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7)	9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9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	9
5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0)	9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6)	9
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1)	9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2)	9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2)	9
5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6)	9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5)	9
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9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2)	9
6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8)	9
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9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1)	9
6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9
6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9
65.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2)	9
6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1)	9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	9
6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6)	9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7)	9
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1)	9
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중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3)	9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1)	9
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2)	9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3)	9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3)	9
7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7)	9
7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	10
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0)	10
7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9)	10
8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8)	10
8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651)	10
8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4)	10
83.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10
8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	10
8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4)	10
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8)	10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7)	10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6)	10
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1)	10
9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3)	10

9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2)	10
9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6)	10
9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9)	10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3)	10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10
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10
9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8)	10
9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9)	10
9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3)	10
10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7)	10
10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3)	10
10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0)	10

(15시47분 개의)

○위원장 조해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보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1월 14일자로 국민의힘 조명희 위원님이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보임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회의가 개의되지 못한 관계로 소개가 늦어졌습니다. 조금 이따가 참석하시면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은규 행정실장입니다.

다음 오세일·조남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새로 부임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월 15일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되고 4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에 위원회에 회부되어 청원심사기간이 지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 건을 처리한 후에 위원회에 회부된 9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많이 누그러졌습나다마는 아직도 국회 내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발언하실 때를 포함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요청안……

○권인숙 위원 제가 급히 이석을 해야 돼서요, 먼저 의사진행발언 잠깐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의결은 하고 가셔야 될 텐데……

○권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떠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료 요청 관련한……

○위원장 조해진 의결을 먼저 하고 발언하시지요.

1.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5시50분)

○위원장 조해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하여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사정상 다소 늦게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마련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5월 6일 금요일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과 채택 일정 등 사항은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시계획서와 같이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총 41개 기관, 총 760건으로 자료제출 대상 각 기관으로 하여금 5월 3일까지 각 의원실에 답변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강득구 위원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으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들어오는 게 상당 부분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다 그러면서 거의 다 미제출 상태입니다. 이래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자료제출 요구했고 그리고 5일 이내에 자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인숙 위원 저도 발언을 하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료제출과 관련된 겁니다.

○박찬대 위원 교육부 관계자가 자리에 없지요?

○위원장 조해진 아마 의결 절차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오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3일까지 각 의원실에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이후에 우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제출된 자료제출 요구는 현재 총 52개 기관, 총 1453건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제출한 안을 토대로 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5월 6일 인사청문회 시에 증인 7명, 참고인 6명을 각각 출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출석을 요구할 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에 대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사청문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질의요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인사청문회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이 경우에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개최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서는 5월 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서면질의서는 5월 1일 일요일 12시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5시54분)

○위원장 조해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에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심사 기준 및 평가 결과 산정 이유 공개에 관한 청원으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해당 청원의 심사기간을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85)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49)

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1)

9.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2)

1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9)

1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1)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07)

1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3)

1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4)

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54)

1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74)

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03)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04)

19.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56)

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4)

21. 국립대학법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81)

2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94)

2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1)

2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75)

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92)

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15)

2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22)

2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54)

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555)

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7)

3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68)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06)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76)

3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0)

3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

- 표발의)(의안번호 2113691)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20)
3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46)
3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5)
39.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36)
4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0)
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3)
4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0)
4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38)
44.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0)
4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41)
46.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52)
4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959)
4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87)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92)
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9)
5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0)
5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86)
5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1)
5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2)
5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2)
5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06)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15)
5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26)
5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2)
60.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8)
6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1)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61)
6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9)
6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83)
65.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42)
66.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51)
6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70)
68.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6)
6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7)
7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1)
7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23)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1)
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2)
7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63)
7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3)
7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27)

7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75)
7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0)
7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29)
8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8)
8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651)
8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54)
83. 장애인평생교육법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61)
8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1)
8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4)
8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98)
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37)
8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46)
8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1)
90.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13)
9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2)
9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6)
9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9)
9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3)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7)
9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18)
9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8)
 9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9)
 9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3)
 100.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7)
 10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3)
 10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0)
- (15시56분)

○위원장 조해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02항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사님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3월 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률안 등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체토론은 관례에 따라서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께 5분씩 드리겠습니다.

○권인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권인숙 위원님.

○권인숙 위원 바로 어제 후보자의 해외출장 날짜와 아들 입·출국 기록이 같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쪼개기, 총장선거 운동을 위해 법카를 썼다는 의혹, 공금을 쌌돈처럼 쓴 정황으로 보아 아들이나 가족여행 체류에 혜택을 컸으리라는 개탄스럽지만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입증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후보자와 아들의 미국, 일본 방문 시 항공권과 숙박 영수증 등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면 끝날 일입니다.

이를 포함해 구두로 자료 요구 몇 건 더 드리겠습니다.

외대총장 이전 보직자 시절의 업무추진비 내

역, 영수증, 카드 명세서, 2020년 교육부 한국외대 감사결과보고서 원본과 외대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태 이런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에게 물어봐도 이렇게까지 자료제출을 안 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엄연히 국회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에 개별 의원이 각 부처와 기관에 청문회 관련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청문회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요구한 청문회 자료를 후보자와 각 기관이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는 변명일 뿐입니다. 반드시 제출하도록 후보자에게 요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해진 예.

다음은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 장관님, 아마 오늘이 장관님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 지금 법안 대체토론 시간인데……

○강득구 위원 아, 그런가요?

○위원장 조해진 권인숙 위원님은 그래도 의사 진행발언으로 하셨는데……

○강득구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할까요?

○위원장 조해진 대체토론을 마무리하고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요?

○강득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 관련해서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금 상당 부분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 아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예.

○강득구 위원 이 자료를 저희들이 5일 이내에

받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의 미제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는 불가피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모든 자료에, 그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료제출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득구 위원 개인정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데 사실은 장관으로 지명되는 순간 개인이 아니고 공인입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물론 공인이지요.

○강득구 위원 우리가 개인이라면 이렇게 인사 청문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자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합당하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차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할 의무가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저한테 지금……

○강득구 위원 아니, 차관께서……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득구 위원 성실하게 자료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해진 의사진행발언으로 듣고, 대체토론이 없으면 대체토론을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대체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의사 진행발언하십시오.

○이탄희 위원 차관님, 저도 자료제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요.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 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제출이 거부되고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

다. 대표적인 게 한국외대 기숙사 운영권 무단 양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이미 지적이 됐던 건인데요. 그 이후의 후속 조치 관련해서 후보자가 주주로서 재임한 기간, 투자 금액, 배당금, 지분, 이런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것은 후보자 본인에 관련된 자료고 타인에 대한 자료가 아닙니다. 게다가 한국외대에서 다 가지고 있을 자료들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유가 없이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거지요? 교육부가 후보자한테 요청을 하거나 외대에 요청을 했는데 안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아예 요청을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지금 지적 주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건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제출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황 파악은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외에도 후보자가 총장 시절에 사외이사 재직했던 상황 이것과 관련해서 외대 교직원 중에 다른 교직원들도 사외이사 재직한 현황이 어떤지, 다른 국공립대학교 교직원들의 사외이사 재직 현황이 어떤지, 그다음에 후보자 사외이사 재임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이런 자료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안 오고 있고요.

김인경 선수 관련된 학점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 본인이 행정학과 조직관리론 수업을 가르쳤던, 본인이 가르쳤던 과목 관련된 거거든요. 이 과목의 강의 수업계획서, 그 당시의 출결관리지침, 그다음에 그 건 관련해서 총학생회에서 후보자를 형사 고발을 했는데 고발했던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무 이유 없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추가로 후보자 장남 관련해서 후보자 장남이 외대에서 장학금을 어떻게 수령했는지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고자 장학금 수령 현황 요구했습니다. 이것 학교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이것 개인정보도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15조제1항제3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서 불가피한 경우’,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는 경우가

딱 이 경우지요.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나열한 이런 것들이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출 안 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해당 기관에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후보한테 요구를 했는데 후보가 안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부 자체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예 요구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 저는 이탄희 위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지금 차관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을 그렇게 열심히 적어 가지고 ‘그것은 제출 협조하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각 의원실에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각각 필요한 부분의 자료 요청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가지고 사실 자료 요청이 된 건데, 저는 이탄희 위원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너무나 많이 제출된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제출 요구했어요. 미국에서는 1949년부터 현재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명단이 다 있더라고요. 다 공개돼 있더라고요. 교육부에서 저희 의원실에 준 것은,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2021년도 단 1년 치만 우리한테 줬습니다. 이렇게 비교되게 교육부가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에 이렇게 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한국외대 회계감사 보고서 이것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실명 비공개고 개인정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잖아요. 교육부가 생산하고 감사하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잖아요. 이것은 제삼의 어떤 기관이나 대학에 요청하는 자

료도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제출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국회 교육 상임위에서 각각 위원들이 이것, 이것, 이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차관님이 적어 가지고 살펴 보고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부차관 정종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각 의원실에서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공적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최대한 제출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제출을 정확하게 해 주시겠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교육부차관 정종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예,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충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이탄희 위원**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은 그 몇몇 개의 사안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에 따르면 만약에 국가기관이 불성실하게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 대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무 장관에게 국회가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시지요?

○**교육부차관 정종철** 예.

○**이탄희 위원** 지금 이렇게 극히 이례적으로 인사청문회 관련된 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관여가 된 것이 있다고 하면, 불성실함이 관여된 것이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직무가 수행될 기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이것은 장관의 지휘 감독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

떤어떤 사유로 지금 자료들이 제출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의2에 따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가능하시면 국회 법률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증감법상 관계자 징계 등의 필요 조치를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이 있다는 점을 교육부에 한번 상기시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해진** 예, 존경하는 이탄희 위원님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그 제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동용 위원님.

○**서동용 위원** 저도 같은 취지입니다만 몇 가지 내용들을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인 문서조차 개인정보·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외대 총장 시절 후보자가 징계받은 건과 관련해 교육부에 수사의뢰서와 검찰 처분결과서 제출을 요청했더니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서와 고발장 등 관련 자료 제출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출을 피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감사에 근거해 작성한 수사의뢰서가, 그러니까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러저러한 점이 발견되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과 논리를 담은 문서가 개인정보에 따라 보호해야 할 문서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면 그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해도 될 것이고요. 국감 때도 이런 자료들 대부분 개인정보 미식별 처리하고 제출하지 않습니까?

또 1982년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등록 기간이 삼사 개월 정도 겹쳐서 특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래서 대학원 1학기 수강내역이나 성적표를 요구하니깐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공직후보자의 학위 논문, 공적 심사를 거쳐 통과한 논문이 개인정보일까요? 후보자가 학교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연구한 연구 실적, 연구 결과물들은 개인정보, 사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고요. 학자 출신이라면 외려 알리고 싶어 하는 자료일 텐데 지금까지 보름이 넘도록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검증 받는 자리지요. 청문회에 임하겠다는 적어도 개인정보 미동의나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이유를 대지 말고 정말로 제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인지, 후보자가 노력해도 제출할 수 없는지, 이러한 성의 있는 답변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건대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인사청문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해진 잘 알겠습니다.

청문회 개최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시간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제출해야 될 자료는 시한 안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간사님.

○박찬대 위원 의사진행발언 저도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면서 현안 질의도 함께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전체회의를 열지 못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 현장의 코로나 엔데믹 준비 상황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안질의를 제안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부의 업무를 점검하고 현안 질의를 하는 것 이 자체를 막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행정부 감시기능 이것 무시하는 거고요, 행정부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김인철 후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일이 세지도 못할 만큼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외대 총장 시절 겸직 관련한 교육공무원법 위반 문제를 포함해서 후보 본인이 교비 횡령,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비위 사실에 연루돼서 교육부가 징계 요구를 하고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모두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석연치 않게 수혜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 모두 교육부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심각한 하자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각 말단기관까지 하나하나 자료 통계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스스로 감사했던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외대 회계감사 당시 교육부가 작성했던 문답서, 사실 확인서, 처분 요구서 등 감사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폴브라이트 장학금도 공교롭게 두 자녀가 모두 수혜받았는데 특히 아들이 받은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동문회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정황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국고가 39억이나 투입되는 장학사업인데 심사 과정이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폴브라이트 장학금 선정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포함해서 김인철 후보 자녀가 작성한 모든 서류와 심사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번 공통 자료 요구에도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될 경우 폴브라이트 장학사업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고 예결산 심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인철 후보가 자신과 가족에게 온갖 셀프 혜택을 준 사실이 밝혀진 만큼 자녀의 대학 입시 과정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생활기록부, 자원봉사 실적 등 자녀 관련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양산하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해진 잘 알겠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정 위원님.

○강민정 위원 지금 김인철 후보는 아니지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교육부가 관계된 일이라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자녀 입시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사회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분야, 다양한 유형, 다양한 형태의 비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호영 후보 당사자가 ‘교육부 조사 받겠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당당하고 전혀 공정을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 조사 받겠다’ 이렇게 발언을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교육부가 경북대에 대해서, 병원과 경북대의 입시 관련

된 특정감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가 4월 25일 날 개최가 됐고 사실상 이게 제기된 지가 작년 7월 중반인데 짧은 3개의 논문하고 박사 논문 하나를 가지고 몇 달째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대는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일정조차 알려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역시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자회견을 해서 보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다 공통적으로 일관된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게 교육기관 안에서 연구자 혹은 대학원생 혹은 대학생과 관련된 연구 비리 혹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입시 비리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지금 교육기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교육부에서 김건희 씨 논문 처리와 관련해서 국민대에 빨리 논문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것을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먼저 국민대와 관련해서는 국민대가 교육부에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했던 계획된 시간보다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저희에게도 그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국민대에 원래 계획대로 조사의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입시 의혹이나 이런 논문 연구 부정과 관련해서 저희는 이게 대학이 하계끔 되어 있어서 대학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의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는지를 보고 그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매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난번 미성년자 논문도 그렇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그런 입시 또 채용, 연구 부정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교육부장관으로서

감사를 가지고서 그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나 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전담기구라든가 여러 부처의 관련된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그 문제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적극적으로 제도 보완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북대 관련해서는 대학에 감사 요청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하루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종합해서 그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기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사청문회까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드리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사청문회 때까지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그런데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이게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전 과정을 다 보고 사후적으로 종합적인 어떤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대단히 특수한 상황의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장관님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현재 제기된 것들에 유형이나 성격은 이미 다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에 추가된 어떤 구체적 사실들이 더 추가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정호영 후보자에 관해서 경북대 특정감사 관련 계획서는 수립을 좀 해 놓고 일정 잡아 놓으시고, 거기까지 좀 책임을 져 주시는 마무리를 좀 하시고 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 강력하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제가 임기가 이제 한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아서 실제로 그게 실행 가능한지는, 위원님도 상황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어디까지 일주일여 남은 제 임기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다

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해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는 겁니까, 안민석 위원님?
아니면 그냥 현안질의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넣어 주세요.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굳이 분간을 하라고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그냥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민석 위원 장관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고맙습니다.

○안민석 위원 한때는 동료로서 또 한때는 장관과 위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만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장관으로서 거의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굳이 장관님에 대한 것을 넘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7대부터, 17대·18대·19대·20대·21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한 유일한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교육이 나아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죽은 교육을 조금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구요. 제가 죽은 교육이라 표현을 하면 오로지 입시를 위한 이 교육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교육을 우리가 벗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야가 따로 없고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든 평준화 교육을 지향하든 이 죽음의 교육을 탈피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중앙 교육권력과 특히 지방 교육권력, 17개의 교육감님 중에서 열네 분이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이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이 짧은 멘트 속에는 진보에 대한 질타가 들어 있습니다. 한 개인, 장관님에 대한 질타나 비판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해방 이후 이렇게, 그동안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교육개혁을 요구를 했었는데 해방 이후 이렇게 중앙과 지방 권력을 진보 세력이 다 장악했을 때가 없었고 저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굳이 진보·보수를 나눠서가 아니라 그래도 중앙과 지방 교육권력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집중되었을 때 뭔가를 꼭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기대, 그 기대에 비해서 성과가 참으로 너무 많이 아쉽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발언을 드리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려고 하면, 고등교육은 빼겠습니다. 핵심적으로 교장의 임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장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뭐냐고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에 부임하고서 1년 반이나 2년 있다가 학교를 떠나는 이런 교육이 보편화돼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교육부가 잘하려고 한들, 교육청이 잘하려고 한들 일선의 교육 사령관들이 참교육에 대한 뜻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장 선생이 4년은 한 학교에 있어야지 그 학교의 꼴을 만들고 그 학교 교사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할 텐데 교장 선생님이 2년밖에 안 있다가 다른 학교로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학교 부임하자마자서부터 학교 옮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은 2년 동안 그냥 무사안일하게 학교에 별다른 사고만 없이 있다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즉 집 근처에 있는 학교, 학군 좋은 학교로 옮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를 어떻게 더 잘 만들자는 생각보다는 자리 보전하다가 다른 데 가고자 하는 이런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세계에 이런 식으로 교장의 임기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이 사대·교대 나와서 교장까지 되면 그 학번에서 한 20% 내에 드는 아주 우수한 분들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들인데 이 교장들이 교장이 되는 게 목적인 이런 분들이 교장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육이나 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그걸 위해서 교장이 되는 게 아니라 교장이 되는 게 목적인 분들이 교장이 되는 이런 인사 승진 시스템 그리고 그분들이 2년 있다가, 1년 반 있다가 학교를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교장 임기 체제하에서 대한민국 교육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적어도 교육부장관님께 3년 동안 계셨잖아요. 진보교육감이 열네 분이랴면서요. 그분들 뭐했습니까? 이것 정도는 바로잡

왔어야 됐다……

○위원장 조해진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예.

○안민석 위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이걸 왜 못 했는지 저는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그냥 장관님이 교육감들 불러 가지고 ‘이제 당신들하고 나하고 몇 가지 정도 이거 꼭 한번 하자. 교장에 임명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동안 한 학교에 있도록 하자’ 이게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잡을 수 있는 길인데, ‘이것만큼 하자’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한 대여섯 가지는 있어요. 이런 걸 못 한 게 저는 참 통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고양시에 AI 교육센터가 들어섰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정말 기대를 가지고 가 봤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못 가 봤습니다.

○안민석 위원 한번 가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그래도 인구 1400만의 경기도 최초의 AI 교육센터인데, AI 교육은 필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집으로 치면 그냥 초가집, 초가집. 몇백억은 들여야지 제대로 된 시설이 될 텐데 5억을 들여서 그냥 건물 하나에, 층 하나에 해 가지고 시늉만 냈더라고요. 왜 이걸 제대로 못 하셨을까.

제가 지금 진보·보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 장관님 일주일밖에 안 남으셨지요. 그래도 제가 이 말은 좀 남겨 뒀야 되겠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부 관료들께서, 남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다시 교육부에 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 말씀을 듣는 우리 교육부 관료들도 계시 테고.

적어도 저는 두 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해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안민석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장관의 임기 4년을 불박이로 하는 것, 이것은 제도적으로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죽은 교육 그대로 두자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AI 교육에 대해 가지고는 아이들이

제대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인 지원, 예산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꼭 이루어 주기 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두 가지를…… 다른 것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위원장님이 자꾸 재촉하시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너무나 제가 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도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우리 교육부 관료들이 좀 하십시오. 그러면 국회도 여야를 떠나서 이 문제를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조해진 장관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회의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안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 수장으로서 교육 정책을 오랫동안 책임져 오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임기를 남겨 놓고 있는 시점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소회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질의 끝에 그 말씀도 같이 해 주셔도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안민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 자리여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실 거라는 언질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를 해 왔습니다.

죽은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의 중심 정책에 대한 이해나 판단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님 말씀하신 AI 교육은 다음 정부에서 아마 중요하게, 문재인 정부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교장임기제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취지인지를 이해하고 죽은 교육을 살려야 된다는 그 방향에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리여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정리를 해 왔는데요. 좀 길어질지도 몰라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렇게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 2일에 취임을 하고 3년 6개월간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무엇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이 정말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유치원 3법을 개정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튼튼하게 해 주셨고, 고등교육법이 개정이 돼서 대입 공정성을 더 강화하고 또 대학 입학금을 폐지할 수 있었고,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인재양성 사업을 종합해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국회 상임위에서 국고를 추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중산층 이하의 반값 등록금 지원과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사학 혁신에 꼭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든가 국가 교육 대계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미투 방지 법안이나 학생 인권보호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 등 정말 많은 법안이 우리 상임위를 거쳤고 교육부는 이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해진 위원장님과 박찬대 간사님, 정경희 간사님 그리고 교육위의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의 직책을 수행해 왔는데요. 제가 2018년 8월 말에 장관후보자 지명을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장관으로서 제가 꼭 해야 하는 업무 방향을 두 가지로 정리했고 항상 이를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그 두 가지는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과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었고 저희 교육부의 매년 업무계획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가 변해야 한다, 우리 교육이 급변하는 미래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미래 교육이라는 말이 여전히 모호하고 또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교육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야만 대한민국의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고교학점제는 우리 교육의

질적인 변화, 화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등학교부터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학교에서 옹드려 자는 아이들을 깨우며 학교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연계하는 것이고 교사는 수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학교는 이제 한 명, 한 명의 학생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행정의 기본을 더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학교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원 양성체제 개편 그리고 학교 공간 혁신이 확대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고교체제 개편 정책, 이 모든 정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이끌어 갈 국가교육위원회가 올해 7월 하순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 성장 중심으로 경쟁에서 협력의 교육으로 변화해가는 미래 교육을 다음 정부와 그리고 첫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어 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고등교육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공유대학과 지역대학의 협력 사업은 지방대가 생존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도 요구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5년 단위의 정부가 완결적으로 완성할 수는 없는 일이었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각별한 관심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교육 혁신을 이끌어 갈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진 7월 하순에 정상적으로 출범하고 교육위원 또한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재임기간 3년 6개월여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 코로나 대응이었는데요. 처음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 정말 어렵고 고심이 컸었지만 학교현장의 헌신과 많은 분들의 조언 덕분에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학교현장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의 일상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제 직책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학교의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다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과 정책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여러 평가와 말씀들을 들겠습니다.

코로나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컸던 사교육비

문제나 대입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이런 부족했던 부분들은 더욱 개선해 주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지난 3년 6개월여 동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해진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유은혜 장관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우리 국회 관계자 여러분 또 언론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인철)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오늘 의결한 것처럼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덕 위원님 오셨는데 회의를 마치게 됐습니다.

청문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안심사 (7인)	◎박찬대 권인숙 서동용 이탄희	더불어민주당(4)
	김병욱 정경희 조명희	국민의힘(3)
예산결산심사 (8인)	강득구 강민정 김철민 박찬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5)
	◎조경태 김병욱 조명희	국민의힘(3)
청원심사 (4인)	김철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2)
	◎정경희 정찬민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7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신청 교섭단체
김종석	주외대어학연구소 대표이사	외대어연 부당이익 의혹 관련	더불어 민주당
심재옥	전)한미교육위원단 단장	폴브라이트 장학금 관련	
김종철	동원육영회 이사장	겸직 승인 관련	
김유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금수저 조사 경위	
김창주	교육부 공무원	2019 한국외국어대학교 감사 관련	
권병욱	한미교육위원단 단장	장학금 선발 관련	
최문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장학금 선발 논문공저 등 사실확인	

참고인(6인)

성명	직업	신문요지	신청 교섭단체
김나현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등교육정책 현안 관련	더불어 민주당
김병국	정책실장		
김용식	전)한국투자증권 그룹장	2020년 송도캠퍼스	
김태희	현대건설 건축사업부 상무	개발계획 MOU 관련	
안도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사범대 통폐합 관련	
테디힐	채드워송도국제학교 총괄교장	대한민국 교육정책에 대해 국제학교 교장으로서 진단과 전망	

○출석 위원(13인)

강득구 강민정 권인숙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윤영덕
이탄희 정경희 조경태 조명희
조해진

○청가 위원(1인)

도종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재
전문위원 박재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총리겸	장관	유	은	혜
차관	관	정	종	철
차관보	보	이	상	원
기획조정실장	실장	김	문	희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	.	조명희	국민의힘	2022.1.14.
법안심사 소위원회	조경태	조명희		2022.4.7.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	정경희	조명희		